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1089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27,715,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7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31,623,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1,6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8년 이전부터 C와 물품거래를 하여 2020. 5. 16. 기준으로 C에 대하여 31,623,4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차796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1,6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7. 1.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C가 2012. 11. 30.부터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C가 2018. 11. 29. 피고에게 그 소유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18. 11.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은 33,294,400원이었고, 그 후 C가 변제한 금원은 합계 5,579,000원이다.

마.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2017. 11. 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6,740,580원의 채권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9. 12. 6. 해제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75,000,000원이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범위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그 자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증여 이후의 거래에 관하여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다거나 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3,294,400원이고 그 후 C가 합계 5,579,000원을 변제하였는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지급한 물품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발생한 물품대금부터 순차로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잔존하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27,715,000원(= 33,294,400원 - 5,579,000원)이다. 따라서 위 물품대금채권 27,815,000원은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가 무자력이 된 사실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물품대금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아니라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에 그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에 위 압류가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7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8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등기된 압류의 채권액이 6,740,580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이전된 C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40,759,420원(= (275,000,000원 - 180,000,000원) × 1/2 - 6,740,580원)이 된다. 한편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금' 31,623,400원을 주장하는데 그 중 27,715,400원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27,715,40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27,715,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7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지혜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75.41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441.3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441.3분의 55.16

중

1/2 지분

